



: 2021-03-25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2443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8.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5.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30,73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30,7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2021-03-25

가.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제3 채무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1 압류', '제2 압류'라 한다).

순번	사건번호	집행권원	청구금액(원)	결정일/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1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31431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2186호 공정증서	110,369,101	2011. 12. 01.
				2011. 12. 06.
2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60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6291호 판결	104,645,936	2015. 08. 13. 2015. 08. 19.

2) 제1, 2 압류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종류' 기재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제3 채무자 16'이 D이다).

제1 압류

나. 채무자 B () 이 제3채무자 12. 13. 14. 15. 16. 17. 에 대하여
현재 가입된 보험 및 향후 가입되어지는 보험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보험계약 만기, 해약, 실효, 사고시, 해지등)채권 및 보험금 지급청구채권 중 아래에서 기재한 순서
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제2 압류

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 11,12,13,14,15,16 에 대하여 고객으로서 가지는 현재 및 향후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중도해지(해약), 실효, 만기 시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환급금) 반환청구채권 및 등 보험금 지급청구채권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1) F은 2009년경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G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H(I생)
- 보험기간: 2009. 1. 6.부터 2086. 1. 6.
- 만기수익자: F

2) H은 2019. 10. 24.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한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정한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사고이다(이하 위 사고로 인한 사망을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8조(별지와 같음)에 의하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는 H의 상속인이므로, 피고는 위 약관에 따라 D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이하 피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이라 한다).

다. 배당 경위

1)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제1, 2 압류명령이 D에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4,000만 원을 공탁하고(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제134호),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

2)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20. 5. 25. 실제 배당할 금액 40,040,738원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30,030,738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



다.

3)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제1, 2 압류 대상이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제1, 2 압류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에 기재된 채권인지 여부

① 앞서 본 피압류채권에 관한 기재[1의 가.2)항 부분]는 통상 제3 채무자가 보험회사일 경우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구로 보이고, ② 위 기재가 ④ 피고가 직접 D과 계약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⑤ 피고가 보험계약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처럼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구분하여, 압류 대상을 전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으로 한정할 의도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같이 피고가 보험계약자는 아니지만 보험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도 제1, 2 압류의 피압류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압류적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장래 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압류할 수 있으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0.



: 2021-03-25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 14, 17조의 규정(별지와 같음)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제1, 2 압류일로부터 상당 기간 이후에 발생한 장래의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망 을 제1, 2 압류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일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제1, 2 압류 당시 가까운 장래 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채권이 아니어서 압류적격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제1, 2 압류는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관련약관규정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을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의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수의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의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행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력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쪼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헬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2021-03-25

제15조 (사망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삼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28조 (보험수의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의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